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관련 방침 안내

I. 대회 운영

-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 ◆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각종 부대행사 취소

□ 대회 운영방침

- (참가인원 최소화) 대회 참가 인원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원 20% 축소
 - 필수인력을 제외한 각 시·도별 선수단 임원 10명으로 인원 제한
 - 감독·코치를 제외한 각 선수의 보호자는 시도별 50명 이내로 제한

구분	참여 가능 인원	비고
단장	1명	◇ 각 시도별 1명
부단장	0명	◇ 부단장은 참가 제한
총감독	1명	◇ 각 시도별 1명
감독 및 코치	참가신청자	◇ 참가신청 및 ID카드 발급자
임원	9명	◇ 각 시도별 임원 9명 이내 * 명단 제출자만 참석 가능
보호자	50명 이내	◇ 참가신청자 중 필수 보호자 각 시도별 50인 이내
수어통역사 / 로더	참가신청자	◇ 참가신청 및 ID카드 발급자

- (개최 종목 축소) 시범종목(슬런, 쇼다운, 펠드골프) 및 각 종목별 시범경기 개최 제외
- (무관중 경기) 전종목 무관중 경기 및 서포터즈 미운영
- (사전·주기적 PCR검사) 대회 참가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결과자만 개최지 이동 및 대회기간 중 PCR 재검사(72시간 이내) 시행
- (부대행사 취소) 개·폐회식 취소 및 각종 부대행사 취소
- (시·군 및 경기장 간 이동 금지) 시·군 및 경기장 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동 금지
- (실내종목 인원 제한) 실내 경기종목은 동일시간 경기장 내 총인원이 50명 이내로 대회 운영
- (선수단 숙소 단독운영) 각 경기단체 및 시·도별 선수단 단독숙소 운영 및 1인 1실 숙박

- (개최지 활동제한) 시합종료 후 선수단 숙소로 복귀 후 지정식당 외 취식 금지 및 경기가 마무리된 참가자는 연고지로 즉시 귀가
- (시상운영 간소화) 각 종목별 시상은 시상식 간소화(메달수여식 없이 사진 촬영만 가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종합시상은 순위발표 및 시상배 별도 전달
- (참가제한 규제 미적용) 이번 대회 참가 신청자 중 코로나 감염 우려로 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대회 참가 제한 규정 미적용

□ 관련규정: 「전국장애인체육대회규정」

제43조(무자격선수 출장) ② 참가 신청하여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하며, 실격된 선수는 차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미참가 사유가 천재지변,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 (격려 방문 최소화) 시도 임원진의 격려방문은 각 종목별 1회로 제한
- (방역 지침준수) 각 종 업무회의 또는 세미나 등 각 종 모임 시 비대면 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 개최

☞ 참고: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2021.10.17.)

구분	3단계	4단계	비고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단계 사적 모임 제한 - 18시 전 4명 / 18시 후 2명

II. | 경기 운영

- ◆ 코로나 의심환자 및 확진자 대회 참여 불가
- ◆ 코로나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시상운영 안내

□ 의심환자 · 확진자 발생 시 방침

○ 경기 전 발생

-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선수 및 팀 제외 후 경기 진행
-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시설 대기 후 시합 전까지 유증상 여부 체크

유증상 지속 시	◦ 해당선수 및 팀 제외 후 경기 진행
유증상 개선 시	◦ 경기장 현장 의료진과 방역담당관 협의 후 경기 참가 여부 결정 * 증상이 개선되었어도 현자 의료진 및 방역담당관의 결정에 따라 대회 참가 불가 할수 있음 (2차 경기문진표 참고)

○ 경기 진행 중 또는 경기 후 발생

- 확진자 발생 시까지의 진행 중인 경기종료 후 후속조치 시행
- 후속 조치

단계별	조치 내용
1단계	◦ 대회 중지하고 확진자 격리 및 이송(확진자 이송 관리 참조)
2단계	◦ 방역 담당관 보고 및 방문시설 폐쇄(해당일 포함 최소 2일)
3단계	◦ 밀접 접촉자 자가 격리(최소 14일) 및 PCR 검사 시행
4단계	◦ 대회 재진행 여부 결정 * 대회 재진행 및 중단여부는 경기단체가 결정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대회 재진행 승인은 밀접접촉자(심판, 지도자, 운영진 등) 범위, 대회 기간에 따른 향후 일정, 방역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 관계기관(경상북도, 경기단체 등)과 면밀히 검토 후 결정 예정

□ 종합점수 배점 방식 안내

- 정상 종료 시: 참가 요강 안내에 따라 종합점수 배점 및 종합순위 산정
- 의심환자 발생 시

- 유증상 지속으로 해당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면 점수 배점 없음

○ 확진자 발생 시

- 종목별 경기 참여자 중 확진자 발생으로 해당 종목 경기가 중단되면 경기단체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의(대회 재개최, 경기결과 및 세부 경기진행 여부 등)하여 시·도 종합점수 및 종합 시상을 중단 할 수 있음
- 확진자 발생으로 경기가 중단되면 확진자 발생 후 경기종료까지의 경기기록과 순위만 인정
- 기본 배점은 총 참가 선수(팀) 기준으로 배점하며, 코로나 확진자는 자동 실격처리 되고 해당 선수(팀)은 0점 처리 됨
- 기록 종목(수영, 육상, 역도, 파크골프, 트라이애슬론, 카누, 볼링, 댄스, 조정 등)은 세부 이벤트별 확진자 발생까지의 기록으로 순위 산정 및 점수 배점
- 시도별 대진 종목은 세부 이벤트 별 8강 이상의 경기종료 된 시점의 순위를 기준으로 배점하고 16강 이하로 완료 된 경기는 배점 없음, 시도별 대항전 첫시합이 8강 이내면 점수 배점

□ 기타사항

- 코로나 확진자 발생 종목만 경기중단 타 종목은 경기 진행
- 타종목 선수를 포함하여 코로나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는 경기 참가 불가

III.

방역 운영

-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참조
- ◆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각종 행사 소규모로 개최
- ◆ 사전 방역계획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과 철저한 현장 방역 실시
- ◆ 각 기관별 방역담당자 지정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기본 방역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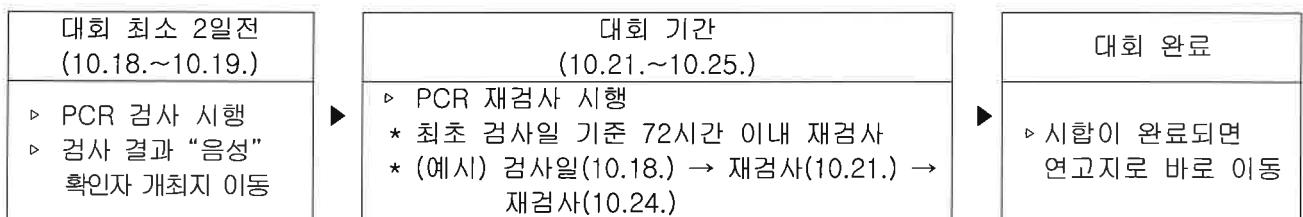
- 참가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대회기간 전 종목 무관중 경기 진행
- 실내 종목은 동일시간 경기장 내 총인원(선수, 지도자, 심판, 운영진 포함)이 최대 50인 이하로 운영
- 대회 참가자 전원(선수, 지도자, 임원 등) 48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대회 참가 가능
 - * 대회기간 참여기간에 따라 코로나-19 PCR 재검사 1회 이상 실시
- 대회기간 전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된 경우 대회 참가 가능
 - 대회참가 전 PCR 검사 시 바이러스 재 검출 되더라도 참가 가능
(*사전 의료기관 확인서 제출 필수 불임2 참조)
-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 확인자도 시합 개시 전까지 발열 체크 시 37.5° C 이상 및 유증상이 있을 경우 대회(시합) 참가 불가
- 개인 간 신체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필수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위기 상황 발생 시, 코로나-19 방역담당관을 통한 위기관리 및 대응

□ 방역담당관 운영

- ◆ 방역담당관 운영 원칙
 - 방역담당관은 별도로 지정한다.(각 단체 지정 인력 1명 필수)
 - 대회 준비, 진행 및 대회 종료 시까지 방역 전반 총괄 관리
 - 방역담당관은 대응 계획 수립 및 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 경기장 방역요원 운영 관리 및 현장 방역 역할 수행
- ◆ 방역담당관 역할
 - 방역담당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수시로 특이사항 보고 및 공유 (전국체전기획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각 단체별 방역담당관 등)
 - 참가 선수단 및 기타 인원 중 코로나-19 증상 등 발생 시, 즉각 신원 확인 및 격리 후 보고 및 신고 접수
 - 시합장 입장 시 PCR검사지 확인, 발열체크, 유증상 확인, 출입자 명단 확인, 방역관련 인원 관리
 - 시합장 및 시·도 선수단 방역 관리·감독(경기장 외 선수단 일상 활동 포함)

○ 경기단체 방역담당관 역할

- 대회 참가 기준 48시간 이내 대회 운영진 전원 PCR 검사 결과 확인
 -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대회 개최지로 이동 안내
- 대회장 입구 출입자 관리 감독
 - ▲ 입장인원 마스크 착용 점검
 - ▲ ID카드 확인
 - ▲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
 - ▲ 입장 시 손목띠 부착
- 경기장 입장 시 대회 참가자(선수, 심판, 지도자, 운영진 등) PCR검사 여부 점검



- 경기장 방역 운영

- ▲ 경기장 별 방역요원 배치
- ▲ 참가자별 동선 구분
- ▲ 주기적(2시간 이내) 경기장 환기 시합
- ▲ 선수외 마스크 착용 점검
- ▲ 예방수칙 포스터 부착 코로나
- ▲ 방역 관련 수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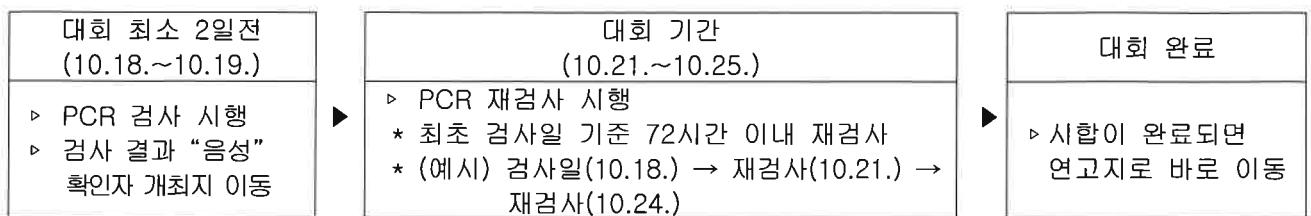
- 시합 방역 운영

- ▲ 선수 전용물품 사용 점검
- ▲ 공용물품 사용 금지
- ▲ 시상식 간소화(메달수여식 없이 사진촬영만 가능)

- 경기장내 의심환자 및 확진자 대비 별도의 격리 공간 마련
- 방역준수여부 체크리스트 확인
- 경기장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초동조치 후 즉각 보고
- 일자별 경기 종료 후 특이사항 보고

○ 시·도 방역담당관 역할

- 대회 참가기준 48시간 이내 참가자(선수, 임원 등) 전원 PCR 검사 결과 확인
 -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대회 개최지로 이동 안내
- 대회 기간 중 참가 선수단 주기적인 PCR 검사 여부 확인



- 시도 선수단의 개최지 이동 및 대회기간 중 이동은 공식 차량 이용
- 시도 임원 격려방문 점검 및 검토 (각 종목별 1회)
- 대회 기간 중 매일 각 종목별 선수 2회 이상 발열 확인(▲매일 8~9시 사이,
▲오전 경기장 출발 직전)

※ 경기장 이동 전 참가자(선수, 지도자, 임원 등)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 호흡기 질환 등) 관련 의심증상자가 있을 경우 참가 제한 후 방역관리 절차에 따라 조치

- 동일종목 선수 외 타 종목선수와 교류 및 접촉 제한
- 선수단 관리 감독

- ▲ 선수단 수송 관리(종목별, 인원별, 지역별로 구분 최소 인원으로 이동)
- ▲ 숙소 방역(숙소별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통한 비상연락망 구축 / 숙소별 최대 2인 1실 운영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1시간) 환기 / 공용 공간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개인별 간식 섭취 / 불필요한 외출 자제 점검 등)
- ▲ 사적모임 금지(숙소 및 외부식당 등 사적모임 제한)
- ▲ 식사 방역 조치(특정시간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 ▲ 개인위생 안내 지속적·주기적 안내

- 경기장 외 장소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초동조치 후 즉각 보고
- 일자별 경기 종료 후 특이사항 보고

□ 코로나 방역 기관별 업무

○ 주최·주관기관

- 방역 당국(중대본) 및 관련 부처(문체부, 보건복지부)의 대응 지침을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종목별 경기단체 등 참가자에게 즉각 공유
- 방역당국의 추가 지침 및 개최지 환자 발생 등 상황에 따라 대회 운영에 대한 추가적 조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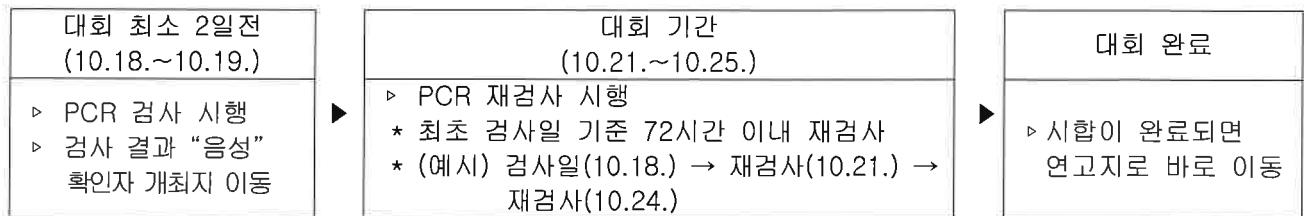
* 사전조치: 대회 참가 관련 단체에 대회운영 조치 계획 협조 요청(문체부 보고 후)

* 대회운영: 개최지 환자 발생 및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 경기중단 또는 취소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 환자 발생 시 지자체(시·군) 방역당국 이송 및 격리 등 대응 방안 공유
- 대회기간 중 각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운영 및 긴급 검체 지원
- 대회기간 중 관계 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 문체부, 경상북도, 시·도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비상연락망 향시 유지
- 대회장 별 시설물 안전·방역 관리 요원 지원 및 경기장 소독 지원

○ 종목별 경기단체

- 대회 운영진 및 참가자 대상 개인 방역 의무사항 준수 안내 및 교육
- 대회참가 기준 48시간 이내 참가자(운영진, 심판, 임원 등) 전원 PCR 검사
-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대회 개최지로 이동
- 참가자는 대회기간 중 주기적(최대 72시간 기준) 재검사 실시



-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방역 관리 절차에 따라 초동 대처
- 방역담당관 지정하여 경기장 세부 방역 계획 수립 및 대응
 - 대회장 입구 출입자 관리 감독 (▲ 입장인원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 ▲ ID카드 확인 ▲ 문진표 작성, ▲ 발열체크 등)
 -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수시 방송 및 점검
 - 경기장 방역 운영 (▲ 참가자별 동선 구분, ▲ 방역요원 배치, ▲ 경기장 환기, ▲ 예방수칙 포스터 부착, ▲ 시합선수 외 마스크착용 등)
 - 시합 운영 방역 (▲ 선수 전용물품 사용 여부, ▲ 공용물품 사용금지, ▲ 경기장 환기, ▲ 예방수칙 포스터 부착 ▲ 시상식 간소화 ▲ 고용시설 운영자제 등)
 - 방역준수여부 체크리스트(붙임5 참조)에 의거 점검

* 방역담당자는 개최지 이동 전 운영진 PCR검사결과 확인 필수

- 경기장내 의심환자 및 확진자 대비 별도의 격리 공간 마련
- 일자별 경기 종료 후 특이사항 보고

○ 시·도 선수단

- 대회참가 기준 48시간 이내 참가자(선수, 지도자, 임원 등) 전원 PCR 검사
 -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대회 개최지로 이동
- 참가자는 대회 기간 중 PCR 재검사 1회 이상 실시(재검사 기간 10.21.~10.24. 사이)

* 시합 참가자는 시합시간 기준 최소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참가 가능 미제출 시 참가 불가(선별진료소 붙임5 참조)

대회 최소 2일전 (10.18.~10.19.)	▶	대회 기간 (10.21.~10.25.)	▶	대회 완료
▶ PCR 검사 시행 ▶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인자 개최지 이동		▶ PCR 재검사 시행 * 최초 검사일 기준 72시간 이내 재검사 * (예시) 검사일(10.18.) → 재검사(10.21.) → 재검사(10.24.)		▶ 시합이 완료되면 연고지로 바로 이동

- 시·도 선수단의 개최지 이동 및 대회기간 중 이동은 공식 차량 이용 *
수송 가이드라인 참조
- 선수단 격려는 각 종목별 1회로 제한
- 대회 기간 중 매일 2회 이상 발열 검사(▲매일 8~9시 사이, ▲경기장 출발 직전)
- 시·도 선수단의 동일 종목 선수 외에 타 종목 선수와의 교류 및 접촉 금지
- 방역담당관을 지정하여 방역계획 수립 및 대응
 - 선수단 관리·감독 (▲숙소 방역 관리·감독, ▲사적모임 금지, ▲식사 방역조치,
▲불필요한 외출자제, ▲개인위생 안내 등)
 - 시합 참가선수 관리·감독
- ※ 경기장 이동 전 참가자(선수, 지도자, 임원 등)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 호흡기 질환 등) 관련 의심증상자가 있을 경우 참가 제한 후 방역관리 절차에 따라 조치
- 일자별 경기 종료 후 특이사항 보고

□ 의심 환자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 절차

절차	행동요령	비고
1	의심환자(37.5도 이상) 신고 접수 ▶ 발열(37.5°C)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방역담당관 (경기단체 및 시도)
2	① 방역담당관(초동대처 담당자)의 안내로 마스크 착용하고 임시 격리소 이동과 동시에 보건소 등에 즉시 신고 ② 대한장애인체육회 방역담당관에게 즉시 보고	코로나19 방역담당관 (경기단체 및 시도)
3	① 현장 의료진 진료 및 기초 증상점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 조치 필수사항 >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추가문진 ▶ 안정 취한 후 체온 재측정 ▶ 최대 10분 간격으로 3회까지 측정 </div> ② 현장 의료진의 진료와 의심자 증상에 따라 선별진료소(보건소) 후송 여부 결정 * 해당 종목 경기장 격리시설로 이동	코로나19 방역담당관 (경기단체) * 경기장 외 코로나19대응 TF 팀에서 의료진 파견
4	선별진료소(보건소) 후송	코로나19 방역담당관
5	PCR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양성판정) - 확진자 동선 파악 후 밀접접촉자* 확인 후 PCR검사 조치 * (기준) 확진자와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15분 이상, 1m 이내에 함께한 사람 - 해당 경기장 및 숙소 시설 등 방역 및 소독조치	코로나19 방역담당관 (경북체전기획단 및 의료기관)
6	확진자는 확진판정 보건소와 소재지 보건소와 협의 후 생활치료센터 후속 이송 결정	의료기관

□ 확진자·밀접접촉자 이송 관리

분류	조치사항	비고
확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확진통보 받는 즉시 방역담당관과 운영위원 및 종목담당관에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중단 및 경기장 폐쇄 조치(해당일 포함 최소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장 방역 및 소독실시 • 선수단 내 접촉자* 발생 시 해당 인원 격리 및 PCR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따름 ②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본부 119구급차를 이용해 이송 조치 ③ 확진판정 보건소와 거주지 보건소 협의 후 이송 결정 	<p>【비상연락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단체 방역담당관 • 운영위원 및 종목담당관 • 코로나19대응본부 (054-467-1543)
밀접* 접촉자 <small><밀접 접촉자 범위>참조</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보 받는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이 필요하면 자가용 또는 시도운영 본부에서 이송 조치 ② PCR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나올 때 까지 선수단 숙소에 격리 ③ PCR검사 결과에 따른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결과자 자가 격리 이송 조치(시도운영본부) • 확진자는 지침에 따라 이송 조치(소방본부) 	<p>【이동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R검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택시 활용 (시·군당 2대) ▷ 음성 결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운영본부에서 조치 ▷ 확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본부 구급차이용

◆ 밀접접촉자 범위

< 접촉자범위 예시 >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 1)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 2)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 3)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 4)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 본 예시는 WHO의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자 범위를 결정

구분	상황별 접촉자
가정,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집에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 자 - 동거인
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환자와 2열 이내에서 15분 이상 앉아있었던 자와 환자와 직접 접촉한 직원(예: 기차 또는 항공기 승무원)
기타 (예배당, 직장, 학교, 사적모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밀폐된 동일 공간에 확진환자와 머무른 자를 접촉자로 관리

* 출처 : Contact tracing in the context of COVID-19 Interim guidance (10 May 2020)

□ 장소별 방역지침

<대회장 운영 관련>

1. 출입자 전원 사전 등록제로 운영
 - * ID카드 발급자 이외 인원 대회장 출입 불가
2. 대회장 출입 시 출입자 방문자 명부(QR코드, 안심전화, 수기 등) 기록 필수
3. 대회장 출입구 최소화 및 선수, 운영진, 관계자 등 참여 구분에 따른 동선 분리
4. 대회장 출입자 전원 비접촉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발열 증상 확인
5. 대회장 경기 진행 중인 선수를 제외한 모든 인원 마스크 착용 필수
6. 대회 운영진은 지정좌석제로 운영 및 모든 좌석은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고 운영
7. 실내 경기장은 주기적인(최소 2시간 이내) 간격으로 환기 필수
8.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운영 금지
9. 선수 개인별 전용물품(타월, 물병 등) 사용 및 공용물품 사용 금지
9. 대회장 내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대비 별도의 격리 공간 마련 필수
10. 대회장(경기장, 화장실, 편의시설 등 포함)과 대회운영에 소요되는 장비 및 기구는 철저하게 방역 소독(1일 최소 3회 이상)

<대회장 외 이용 관련>

1. 시·도 선수단 단독 숙소를 확보하여 외부 접촉 및 동선 최소화, 경기 일정 외 외출 자제
2. 시·도 선수단 숙소는 최대 2인 1실로 운영
3. 공용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및 항시 마스크 착용, 밀폐된 공간과 인파 피하기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
4. 식사 시 최소 인원 취식 및 거리두기(최소 1m 이상) 준수
5. 불필요한 외부 활동 자제 및 방역지침에 따른 위반한 개인 간 사적 모임 금지
6. 선수단 수송차량은 공식 차량 이용

◆ 수송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 수송

- 종목별, 인원별, 경기 지역별로 구분하여 최소 인원으로 이동
- 대회 기간 이동 시 대회 전용차량 이용 * 대중교통 이용 불가
- 버스의 경우 두 좌석당 한명 예약 등 거리확보 권고
- 운전기사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참가자를 태우고 운전할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운전자는 참가자의 신체접촉 제한 및 가방 등 선수 물품 비접촉 권고

◆ 숙소·식당 등 이용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 숙소일반

- 숙소별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통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 숙소별 최대 2인 1실 권고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1시간 이내) 환기·소독 실시
- 숙소 내 사적 모임 및 이동(지인 방 방문 등) 방지
- 공용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간식은 각자 방에서 섭취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도 방역담당자 보고 후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
- 동일 공간, 동일시간 취식 시 최소 인원으로 관리 및 섭취 중 대화 금지
- 외부인 등의 방문 및 불필요한 외출 자제

□ 식당

- 선수단 대상 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식사 제공(거리두기 지침 준수 철저)
 - * 대회 기간 중 종식은 외부 공간에서 개별적 도시락 제공 권고
- 식당 이용 시 특정시간에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 선수단 야간관리

- 선수단 대상 응급, 위급상황 외 외출 제한 안내, 교육(개인적 용무로 외출 불가)
-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선수단 야간외출 기록 관리 철저
- 대회 기간 중 사적 모임 금지

붙임 1**코로나-19 방역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함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체육과	서기관	최은상	044-203-3184
	주무관	이성훈	044-203-3183

□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직함	담당자(성명)	연락망(HP☎)
대회운영본부	부장	김용현	010-5277-7940
	대리	김태연	010-8512-9133
	주임	오창준	010-2663-8914
	담당	이현제	010-3892-3884
	담당	맹찬주	010-3362-6476

□ 경상북도

소속	직함	담당자(성명)	연락망(HP☎)
경상북도 체전기획단	행정부지사	강성조	054-880-2010
	전국체전기획단장	정상원	010-9355-8460
	대외협력팀장	이애희	010-2540-6606
	주무관	조미혜	010-2801-3480

□ 종목 경기단체

종목	직위	담당자(성명)	연락망(HP☎)
골볼	사무국장	김순재	010-2000-1006
농구	과장	박대윤	010-9285-3141
댄스스포츠	대리	김영주	010-5825-6848
당구	주임	신현식	010-7643-1112
럭비	과장	김희수	010-4822-5350
론볼	사무국장	유재욱	010-9889-8959
배구	주임	김성안	010-7617-3071
배드민턴	사무국장	박영호	010-3295-5925
보치아	담당	류현민	010-7677-6086
볼링	사무국장	채순남	010-4026-6026
사격	과장	김경훈	010-5316-7073
사이클	대리	이성재	010-9770-7374
수영	팀장	이동수	010-5558-3113

종목	직위	담당자(성명)	연락망(HPFax)
양궁	과장	김묘향	010-3665-0655
역도	과장	이재형	010-7109-8389
요트	과장	배광호	010-2931-2833
유도	주임	김수진	010-8987-5198
육상	전 인사위원	박기호	010-5343-6041
조정	주임	김지성	010-6347-0486
축구	사무국장	이종수	010-8951-7262
탁구	주임	홍성홍	010-5174-7098
태권도	총괄지도자	박희윤	010-8008-0903
테니스	사무국장	이범주	010-3786-2986
펜싱	지도자(펜싱)	전희영	010-9615-3694
파크골프	과장	우한나	010-3592-9894
필드골프	주임	이덕희	010-3242-8886
게이트볼	사무국장	박은현	010-2479-8106
슬런	이사	권승범	010-9210-5214
쇼다운	주임	한희진	010-9369-0303
카누	매니저	맹찬주	010-3362-6476
트라이애슬론	매니저	문재홍	010-4116-1707

□ 시도 선수단

시도	직위	담당자(성명)	연락망(HPFax)
서울특별시	주임	최혜원	010-2369-9927
부산광역시	과장	박종설	010-3840-2648
대구광역시	팀장	최우영	010-3825-5858
인천광역시	주임	문대훈	010-3369-7146
광주광역시	주임	오혜원	010-6721-1141
대전광역시	대리	이종호	010-8258-4589
울산광역시	주임	신영성	010-9677-7649
세종특별시	대리	황준영	010-7751-8728
경기도	팀장	박광민	031-248-9606
강원도	차장	지덕현	010-2033-7646
충청북도	주무관	성윤중	010-4223-2601
충청남도	팀장	반동혁	010-3739-2110
전라북도	과장	이은호	010-5153-1137
전라남도	대리	이대영	010-6728-7774
경상북도	팀장	장대호	010-9361-2294
경상남도	팀장	강호주	010-3775-6838
제주특별자치도	경기운영담당	강경진	010-3036-7591

붙임 2**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Admission · Discharge
from the Medical Center(Residential Treatment Center)**

성명 Name		생년월일 Birthdate	
시설(기관)명 Name of Medical Center(Residential Treatment Center)	<p>(예시) ○○의료원 또는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 (예시) ○○ Medical Center(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p>		
입원(소)일 Admission Date		퇴원(소)일 Discharge Date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하였음을 확인함.

We confirm that this person is discharged from the Medical Center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according to meeting the standard of
COVID-19 Isolation/Quarantine Release.

발행일: (예시) 2021.○○.○○

△△ 보건소장 (인)

붙임 3**코로나19 자가 문진표****코로나19 자가 문진표**

본 자가 문진표는 2021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본인 및 다른 참가자 등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문진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경기당일 경기장 주출입구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문1. 최근 14일 동안 방문(여행 포함)한 국가가 있나요? (해당란에 "✓" 표시)

[] 방문력 있음(국가명: _____)
(기간: _____) [] 방문력 없음

**문2. 최근 14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해당 없을시 문3으로)**

[] 발열감	[] 오한	[] 두통	[] 인후통	[] 콧물
[] 기침	[] 호흡곤란	[] 구토	[] 복통 또는 설사	[] 그 밖의 증상 (_____)

**문3. 질병관리청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나요?
(해당란에 "✓" 표시)**

[] 예 (격리해제일 : _____) [] 아니오

문4. 기타 대회와 관련 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술하여 주십시오

ex) 선별진료소 검사 유무 및 검사 결과, 14일 이내 확진환자 동선 장소 방문 여부, 국내 집단발생 연관 여부 등

위 자가문진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10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붙임 4**2차 검사 문진표****2차 검사 문진표**

경기장 :

방역담당요원 : (서명)

■ 성명**■ 소속 :****A. 증상(해당항목에 하세요)** 발열(37.5°C) 이상 ($\quad ^{\circ}\text{C}$)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B. 노출/접촉력(해당항목에 하세요) ※ 방역당국에 의해 격리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C. 격리대상자 지정여부(해당항목에 하세요) ※ 방역당국에 의해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자** 확진환자로 통보된 자 자가격리자로 통보된 자**■ 조치결과(해당항목에 하세요)** **경기참가 (A 증상이 경미한 경우)**

(답변 예시) 증상이 경미한 정도이니 경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격리실 (A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답변 예시) 기침 등 증상이 타 참가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경기 참가가 어렵습니다.

붙임 5**방역지침 준수여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 항목	확인	기타 참고사항
1	세부 방역지침 마련 및 관계기관 고지 여부		
2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시설 소관부서 - 보건소 - 소방서 - 의료기관		
3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마련 여부(즉시 신고, 격리, 소독, 대회 중지 등)		
4	경기장 출입시 발열 체크 여부		
5	발열 체크 시 체온 37.5도 이상 측정되는 인원에 대한 격리장소 마련 여부		
6	경기장 출입시 방문자 명부(인적사항, 연락처, 체온 등) 작성 여부(QR코드 활용 권장)		
7	경기 중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 마련 여부		
8	경기 전 · 후 선수단의 접촉 최소화를 위한 동선 관리 여부		
9	경기에 임하는 선수단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 여부		
10	팀벤치(야구의 경우 덕아웃)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천 여부		
11	경기장 환기 실행 여부		
12	경기중 침을 뱉거나, 물품에 침을 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여부		
13	부득이 선수단 외에 경기를 관람해야하는 협회 관계자, 언론, 학부모들도 선수단과 같은 절차 준수 여부		
14	경기장 소독 및 방역요원 배치 여부		

방염담당자 : (성 명)

(인)

붙임 6**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현황**

연번	지역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인근경기장 (종목)
1	경북	예천	예천군보건소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054-650-8011 예천진호양궁장 (양궁)
2	경북	예천	예천권병원	경북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136	054-654-6611 예천진호양궁장 (양궁)
3	경북	안동	안동시보건소	안동시 서동문로 165(북문동58번지)	054-840-5910 안동실내체육관 (보치아) 안동초등학교 체육관 (유도)
4	경북	안동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100 안동실내체육관 (보치아) 안동초등학교 체육관 (유도) 안동재활원 론볼경기장 (론볼)
5	경북	안동	안동성소병원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99	054-850-8114 안동체육관 안동재활원 론볼경기장 (론볼)
6	경북	안동	안동병원	경북 안동시 양실로 11	054-840-0119 낙동강일원 (카누)
7	경북	경산	경산중앙병원	경북 경산시 경안로 11	053-715-0119 -
8	경북	경산	세명병원	경북 경산시 경안로 208	053-819-8500 대구가톨릭대 체육관 (배구)
9	경북	경산	경산시보건소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708-5	053-810-6363 대구대학교 문천지 (조정) 대구대학교 수상정고 (조정)
10	경북	의성	공생병원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 96	054-834-3881 의성전천후게이트볼장 (게이트볼)
11	경북	의성	의성군보건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	054-830-6786 -
12	경북	김천	김천시보건소	경북 김천시 신음동 1284	054-433-4000 김천실내수영장 (수영)
13	경북	김천	김천제일병원	경북 김천시 신음1길 12	054-420-9300 김천실내체육관 (김천종합스포츠타운)
14	경북	김천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김천의료원복사	054-429-8114 -
15	경북	울진	울진군보건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61-8	054-783-1250 후포요트경기장 (요트)
16	경북	구미	구미보건소	경북 구미시 선산대로 111	054-480-7837 구미복합스포츠센터 (볼링) 구미장애인파크골프장 (파크골프) 예스구미스포츠파크 (펜싱) 구미장애인체육관 (슬런)
17	경북	구미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114 구미코 대회의실 (럭비) 박정희 체육관 (댄스스포츠)
18	경북	구미	구미차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 길 12	054-450-9700 구미시장애인체육관 (슬런) 구미시민운동장 (육상) 금오테니스장 (테니스)
19	경북	구미	구미강동병원	경북 구미시 인동20길 46	1599-9669 구미cc (파크골프)
20	경북	구미	구미시선산 보건소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121	054-480-4130 -
21	경북	상주	상주시보건소	경북 상주시 무양동 33-4	054-535-4000 -

22	경북	상주	상주성모병원	경북 상주시 냉림서성길	054-530-7123	상주실내체육관 (농구)
23	경북	상주	상주적십자 병원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054-534-3501	-
24	경북	포항	포항시남구 보건소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제철동) 161-1 남구보건소	054-270-4004	만인당 체육관 (역도) 오천체육문화타운 (골볼)
25	경북	포항	세명기독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 도동 94-8	054-275-0005	-
26	경북	포항	포항성모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 장동길 17	054-260-8019	포스코한마당체육관 (배드민턴)
27	경북	포항	포항시북구 보건소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63	054-270-4114	-
28	경북	포항	포항의료원	경북 포항시 북구 육촌로 36	054-247-0551	-
29	경북	경주	경주시보건소	경북 경주시 동천동 987	054-760-2080	경주보문단지 (트라이애슬론)
30	경북	경주	동국대 경주 병원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	054-748-9300	경주시민운동장 (축구) 경주축구공원 1~6구장 (축구)
31	경북	영주	영주시보건소	경북 영주시 휴천동(휴천2 동) 466-6 영주시보건소	054-631-4000	-
32	경북	영주	영주 적십자병원	영주시 대학로 327	054-630-0100	영주경륜훈련원 (사이클)
33	경북	문경	문경시보건소	경북 문경시 정촌동(정촌1 동) 232 문경시보건소	054-550-8168	-
34	경북	문경	문경제일병원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	054-550-7700	국군체육부대 (태권도) 문경실내체육관 (탁구) 문경실내배드민턴장 (탁구)
35	경북	문경	문경중앙병원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117-18	054-555-2011	-
36	경북	영천	영천시보건소	경북 영천시 옛군청1길 31	054-339-7854	-
37	경북	영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1길 10	054-338-9000	-
38	경북	칠곡	칠곡군보건소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80	054-979-8201	-
39	대구	대구	대구가톨릭 대학교칠곡 가톨릭병원	대구시 북구 칠곡 중앙대로440	053-320-2500	대구국제사격장 (사격)
40	대구	대구	대구동구 보건소	대구시 동구 동촌로79	053-662-3225	-
41	충북	청주	청주성모병원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043-219-8000	-

붙임 7**감염병 환자 격리병원 및 관리시설****□ 감염병 환자 격리 병원****지정현황**

구분	병원명	대표자	소재지	격리상수	비고
감염병 전담 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권태균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180	
국가지정상격리병상	동국대경주병원	서정일	경주시 동대로 87	5	
감염병 전담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함인석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165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정용구	김천시 모암길 24	20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이윤식	안동시 태사2길 55	143	
	동국대경주병원	서정일	경주시 동대로 87	25	
	영주적십자병원	윤여승	영주시 대학로 327	142	

□ 감염병 관리시설**관리시설**

구분	병원명	대표자	소재지	격리상수	비고
경북 제3생활치료센터	농협구미교육원	이재희	구미시 선산읍 유학길 82	146	
경북 제4생활치료센터	경상북학도교	김용태	안동시 임동면 사월큰길 103	100	
경북 제5생활치료센터	S T X 리조트	정광호	문경시 농암면 청화로 509	350	

붙임 8**수기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수기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대한체육회(주최기관)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 출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수기 출입명부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방문날짜, 방문시각, 이름, 전화번호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	<u>4주</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당 시설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질병관리본부	<u>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u>	방문날짜, 방문시각, 이름, 전화번호	<u>역학조사 종료 후 파기</u>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당 시설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발열(37.5°C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시 이용 제한됨

※ 작성한 내용은 4주기간만 보관 후 폐기되오니, 안심하시고 동참해주세요.

* 해당 동의서는 수기명부가 있는 곳에 게시하세요.

불임 9

출입자 수기출입명부 작성양식

참고 1**코로나-19 대응관련 법적근거 주요 내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역학 조사	제18조	<p>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실시</p> <p>- 결과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 (지역확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p> <p>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p> <p>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진술, 거짓자료 제출, 고의 사실 누락·은폐 금지</p> <p>※ (제7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p>
	제18조의4	<p>○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인력 지원 등 요청 가능</p>
	제35조의2	<p>○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누구든지 의료인에 대해 의료기관 내원·진료 이력 등 거짓진술·고의적 누락, 은폐 금지</p> <p>※ (제83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제37조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설치 운영이 가능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숙박시설 및 간이진료 시설을 갖춘 격리소·요양소를 설치·운영하여 조치 가능</p>
	제41조	<p>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음</p>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음</p> <p>※ (제79조의3) 조치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4.5.시행)</p>
	제43조	<p>○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함</p>
	제46조	<p>○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감염병환자등의 가족·동거인, 발생지역 거주인, 접촉자 등에게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조치 가능</p>
	제47조	<p>○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 시 필요한 아래 조치 수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병환자등이 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통행차단을 위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 의심자에 대한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 4. 오염(의심)물건의 사용·접수·이동 등 금지 또는 폐기 5. 오염 장소 소독조치 등의 명령 6. 일정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 금지, 오물 처리장소 제한 <p>※ (제79조의3) 제3호 조치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4.5.시행)</p>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p>※ (제80조) 제1,2,4,5,6호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p>
예방 조치	제49조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수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 · 하수도 · 우물 · 쓰레기장 · 화장실의 신설 · 개조 · 변경 ·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 ·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p> <p>※ (제80조) 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및 제14호는 제외)에 따른 조치에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p> <p>※ (제79조의3) 제1항제14호에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4.5.시행)</p>
현장 지휘	제60조	<p>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 임명가능, 방역관은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 행사(통행 제한, 주민 대피, 매개물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 등)</p> <p>②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 공무원 및 법인·단체·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방역관 조치에 협조</p> <p>※ (제7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p>
	제60조의2	<p>①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은 일시적으로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통행차단 조치 가능</p> <p>②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p>
정보 제공	제76조의2	<p>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등, 출입국관리기록, 그 밖에 이동경로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 가능</p>
시신의장사 방법	제20조의2	<p>① 감염병 환자(또는 사망 후 감염병병원체 보유 확인된 자)등이 사망하면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p> <p>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장시설 설치·관리자에게 협조요청,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p>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사업주의 협조 의무	제41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면 유급휴가를 줄 수 있음(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면 의무적 유급휴가) ②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휴가 중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 불가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제4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등에 들어가 조사·진찰 가능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치료·입원시킬 수 있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하는 조치를 할수 있고,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진찰 가능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을 치료·입원시킬 수 있음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진찰을 받게 할 수 있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 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함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함 * (제79조의3) 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4.5.시행))
한시적 종사 명령	제6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 우려 또는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의 방역업무 종사 명령 가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분야 전문가를 기간을 정해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손실 보상	제7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 보상해야 함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노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수당, 여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치료비, 생활 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② 입원 또는 격리되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아이 돌봄서비스 등의 필요한 조치 시행